

2026년 인증·지식재산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용인시 소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품·서비스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인증·지식재산 지원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5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2026년 모집공고 기간	1차(완료)	2차(본공고)
	2026. 1. 20. ~ 2. 13.	2026. 8. 5. ~ 8. 27.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기업의 기술·제품 품질 경쟁력 및 신뢰도 강화
- 사업기간: 2026. 1. ~ 2026. 12.
- 사업내용: 국내·외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지원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부가세 제외)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 한도
인증	국내		국내 인증 획득을 위한 심사비, 시험·검사비, 대행료 등 관련 비용	200만원
	해외규격		약 579종의 해외규격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심사비, 대행료, 컨설팅 등 관련 비용	500만원
IP (산업 재산권)	특	국내	국내 출원·등록 시 소요되는 대리인, 관납료 등 관련 비용	200만원
	허	해외	해외 출원·등록 시 소요되는 대리인, 번역료, 조사료 등 관련 비용	500만원
	실용신안			70만원
	상표		국내외 출원·등록 시 소요되는 관납료, 컨설팅 등 관련 비용	40만원
	디자인			50만원

- 총 지원한도 내에서 인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교차 신청 가능
 - ※ 예시) 국내인증(200만원) + 국내특허(200만원) + 해외특허(100만원) 신청, 분야별 최대 지원금 한도 적용
- 신청 가능한 해외규격인증 종류는 [별첨2](#) 참조
 - ※ 해당 범위 이외 신청 시 평가를 통해 지원여부 확정
- 지원기업은 총 소요비용의 10% 이상 현금 매칭 필수(매칭 비율 9:1)
 - ※ 예시) 총 사업비 500만원일 경우, 지원금은 450만원 신청, 기업부담금은 50만원 매칭 필요

2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의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 보유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진흥원이나 유관기관, 협회 등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아이디어)으로 지원받은 경우(동일년도 동시수혜 불가)
- 신청기업 지원현황에 대한 진흥원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확인 절차를 통하여 중복수혜 여부 파악 예정

진흥원 지원사업 중복범위

- '동일제품-동일인증' 또는 '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중복수혜로 지원불가**
- '동일제품-상이인증', '상이제품-동일출원' 등과 같은 경우는 지원가능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기업
-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기업
- 타인의 저작권 침해, 창작물을 도용·모방한 기업
- 기타 관련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지급 및 선정방법

□ 지원금 지급: 100% 후지급

- (지급시기) 사업완료 이후 결과·집행보고서 제출을 통해 이상 없을 시 지급
 ※ 선정되더라도 협약종료일까지 인증 획득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이 완료되어야 지급 가능
- 수행계획서의 신청분야 중 **일부만 달성**하거나 사업 **실패** 또는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 지급 불가
- (지 급 처) 선정기업 직접 지급
- (지급조건)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기간 내**(협약 종료일) 결과물 도출 및 **비용 지급을 완료한** 건 ※ 협약기간 이후 비용 집행 시 해당 금액 불인정
- 기업(법인) 명의의 인증 및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성과만 인정하며, **개인사업자**에 한해 개인(대표자) 명의 성과 인정 가능 ※ 공동명의 불가
- 부가가치세, 국내외 송금·이체수수료 등은 사업비 미포함

□ 선정방법

- 외부 평가위원 5인의 선정평가(서면)로 지원기업 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결과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미선정 기업 중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은 고득점 순으로 예비기업 선정
 - ※ 결격사유 등 기타 사유에 의한 탈락(포기)기업 발생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선정평가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준표

○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지원의 필요성	- 추진 목적 및 배경, 추진 필요성 등	20점
기업(제품) 역량	- 기술성 및 제품 우수성 - 사업수행능력,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지원능력 등	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의 체계성 및 적절성, 구현 가능성 - 집행계획 적정성, 활용계획의 타당성 등	40점
기대효과	- 파급효과 및 예상 성과 등	20점
총 계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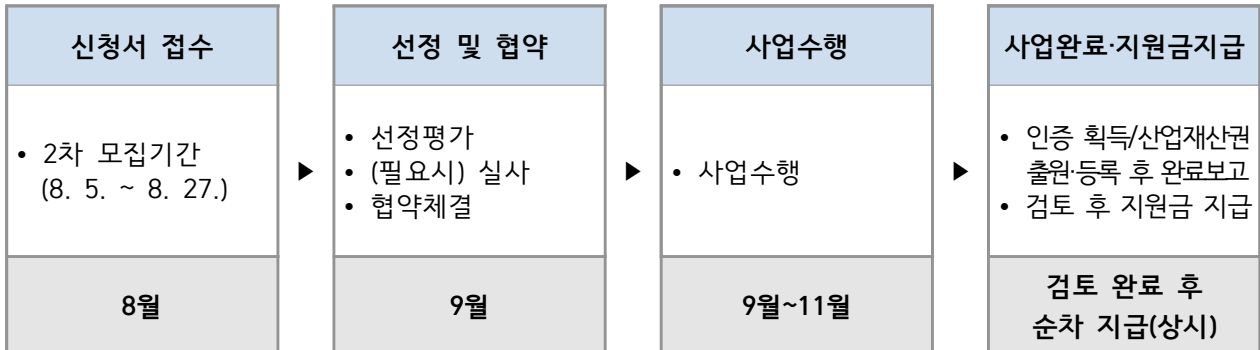
○ 가감점

구 분			점수
가점	진흥원 입주기업		+1점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확인서	+1점
	용인시 우수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용인시 인증서 ※ 중복 적용 불가	+1점
	최근 3개년 이내 사업 수혜이력이 없는 기업		+2점
감점	지원금액 총계 (전년도)	5천만원 이상	-4점
		3천만원 이상	-3점
		3천만원 미만~2천만원	-2점
		2천만원 미만~1천만원	-1점
	매출액 (전년도)	300억원 이상	-4점
		300억원 미만~200억원	-3점
		200억원 미만~100억원	-2점
		100억원 미만~50억원	-1점

※ 가·감점은 선정평가(서면, 발표)시 1회에 한해 적용함

4

추진절차 및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ybs.ypa.or.kr)

☐ 신청기간: '26. 8. 5.(수) ~ 8. 27.(목), 16:00 까지

※ 마감일에 접속이 물리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사이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을 권장(최소 1일전)**하며, **사이트 오류 및 기타 사유로 마감시간 내 신청하지 못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음**

☐ 문의처: 사업화지원팀 031-323-4640, jeey@ypa.or.kr

6

유의사항

☐ 신청기업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거나 필요시 **자체 수행 가능**

※ 대행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업체인 경우 평가 대상 제외

☐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기타 제반사항의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사업 중단 및 지원금 환수**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부수	비고
1	사업계획서	1부	▶ 제공서식 활용(PDF파일로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 / 대행업체)	각 1부	▶ (기업) 본점 소재지 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 1부, (단, 공장소재지로 신청 시, 공장등록증 1부) ▶ (대행) 기업에서 선정한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3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기업)	1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4	견적서	1부	▶ (대행) 업체 견적서 1부 ▶ (자체) 비용 안내 화면, 영수증 등 산정 증빙자료 제출 첨부 ▶ 사전 완료 후 신청 시, 계약서 등 제출
5	2025년 재무제표	1부	▶ 표준재무제표증명 1부 ▶ 재무제표 발급 전이거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증명원 1부
6	지방세, 국세 납입증명서	각 1부	▶ 모집공고일 기준 유효한 서류 제출 ※ 개인사업자의 경우, 발급처 확인
7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동의서	각 1부	▶ 제공서식을 활용하여 신청서 내 개인정보를 기입한 모든 인원 서명 제출(PDF파일로 제출)
8	해당시 가점서류	각 1부	▶ 여성기업, 우수기업, 입주확인서 등

※ 제출 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유의

[참고] 제출서류 발급처

구 분	서 류 명	발 급 처
작성 서류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동의서	진흥원 양식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본사 소재지 확인) ○ 사업자등록증명원(현 소재지 확인)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매출액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는 수입금액증명원 확인	세무서, 국세청 홈택스, 민원24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손익계산서 必)	국세청 홈택스
세금납부 확인	○ 국세 납입 증명서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 납입증명서	시·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 별첨 1.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기본법)
2. 국가별 해외규격 인증 지원범위
3. 2026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8. 28.] [법률 제20362호, 2024. 2. 27., 일부개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20.>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별첨2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범위 ※ 범위 내 신청내용을 평가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 (101)	3-A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AAFA (미국천식알레르기협회인증)	AAR (미국철도협회)
	ABS (미국선급협회)	ACMI AP (미국창작재료협회)	AGA (미국가스협회)
	AHAM (가전제품협회)	AHRI (미국제냉난방협회)	AISC (미국강구조물협회)
	AMEC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 (미국규격협회)	ANSI/ASHRA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ANSI/BHMA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PI (미국석유화학제품인증)
	ASME (미국기계학회설계및제조인증)	ASTM (미국시험재료협회)	BPI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Proposition 65 (식수안전 및 독성물질 관리법)	CADR (청정공기공급률)	CARB (미국캘리포니아대기자원위원회)
	CCS (콘텐츠클레임표준)	CEC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도)	CPSIA (미국소비자제품규격인증)
	CRRC (미국에너지절감형도라벨인증)	CTI (미국냉각탑협회, 미국열성능)	CWA (수자원보호인증)
	DLC (북미에너지절감인증)	DOE office of Energy Efficiency and Renewable Energy (에너지효율)	DOT (미국운수성)
	ENERGY STAR® (에너지절약소 비자제품 프로그램)	Environments For Living Certified Green® (인증된 생활환경 그린프로그램)	EPA (미국환경보호국인증)
	EPEAT (전자제품환경평가)	ETL (전기기기안전규격인증)	ETL SANITATION (국제보건위생인증)
	FCN (미국식품포장제 등록제도)	FDA (미국식품의약국허가 등록제도)	FDA-GRAS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미국연방항공국)	FedRAMP (미국 클라우드보안 인증서비스)	FHWA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Field Evaluation (미국현장설치승인평가)	FIPS (연방정보처리표준인증)	FMVSS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Fugitive Emission Test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Gluten Free Programs (글루텐 안전인증)	Gold Seal (미국음용수관련인증)
	Green Globes (그린글로브인증)	Green Seal (친환경인증)	Greenguard (실내공기질시험·인증)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할로겐 안전인증)	HERS (주택에너지효율등급제도)
	HIRF (고강도전자기장)	HPD (미국 친환경건축재료 유효성검증)	IACP (국제경찰청장협회)
	IAPMO (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ICC-700 National Green Building Standard® (친환경건축설계표준)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건축자재 관련제도)
	ITE Compliance (북미신호등인증)	MiamiDade NOA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MIL-STD-461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MIL-STD-810 (미국육군장비규격)	MIL-STD-901 (미국해군장비규격)	NB mark (미국압력용기압력완화장치인증)
	NCHRP (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미국네트워크장비 구축시스템)	NFPA (미국화재방재청인증)
	NFRC (창호단열규정)	NGV2 (고압연료탱크규격)	NIJ (미법무성사법연구소)
	NIOSH (미국 국립 산업안전 보건연구원)	NMMA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OP (유기제품인증)
	NPC	NR	NRTL

국가별	규격인증		
	(미국위생도기규격)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미국국가공인시험기관제도)
	NTEP (미국측량프로그램)	NTPEP (미국교통제품평가프로그램)	PTCRB (북미휴대폰인증)
	RECs (신재생에너지증명서)	Responsible Recycling Practices (재활용책임인증)	SCS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SRCC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U.S Food Equipment Certification (미국상업용주방기기인증)	UL CAP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환경성주장검증)	UPC (미국배관및기계인증)	USCG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Biopreferred program (미국농무부바이오매스인증)	USDA Organic (미국농무부유기농인증)	Water Sense Label (미국물효율인증라벨)
	WH-ETL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WQA (미국수질협회)
	FDA-NDI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	FCC (미국통신위원회전자파적합성인증)	CPSC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
	UL Hazloc (북미 방폭 인증)	NSF (미국 국가 공중 위생국)	
유럽 (43)	AdBlue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BPR (유럽살생물제관리법)	BSI BS EN489 (열(히트)파이프지침)
	CCA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CCNR (라인강하행중양위원회인증)	CE (유럽통합규격인증)
	CEN/TS 17342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COSMOS (유럽유기농및천연화장품인증)	DEC (디스플레이에너지효율인증)
	EASA (유럽항공청인증)	ECARF (유럽알러지연구재단)	ECB-S (유럽금고안전인증)
	ECO PASSPORT (섬유제조공정인증)	Eco-Labeling (EU환경마크)	EFSA (유럽식품안전청)
	EHEDG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차량용부품안전인증)	EN 14350 (어린이음용장비규정)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반사색 안전 조끼 인증)	ENEC (유럽규격전기인증)
	ESV (유럽위생지구국관련인증)	EU ORGANIC-EEC834/2007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 (유럽선박장비인증)
	European Privacy Seal (유럽프라이버시셀)	FIBC (산업용포장재정전분류)	Green Dot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M Classification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Novel Food (신규식품과 신규식품첨가제인증)
	Regulation (EU) 10/2011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Regulation EC No 1935/2004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79/2009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Seedling (생분해인증제도)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EFfCI (유럽화장품원료품질인증)	CPNP (유럽화장품등록)	EU 2092/91 (EU의 유기농 식품 인증)
	MPA (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ECR R4404 (유럽 유아용 카시트 안전 규정)
	EN14470-1 (Fire safety storage cabinets – Part 1: Safety storage cabinets for flammable liquids)		
네덜란드 (4)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 (반도체RF보안인증)
	N-PTI (네덜란드디젤자동차배출미립자개수농도측정기형식승인)		
덴마크 (3)	DEMKO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rop Mark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Ø-label (덴마크유기농인증)
독일 (19)	AD2000 (독일압력용기인증)	AGR (독일건축건강협회)	BDIH (독일유기농마크인증)
	BV-043 (독일해군장비규격)	DAST-Guideline (독일철강건설위원회표준)	Dermatest (피부저자극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GL (독일 선급 협회)		
영국 (13)	Allergy UK (영국알러지협회)	ASTA (영국안전규격)	BABT (영국통신키기승인)
	BBA (영국건자재인증)	BSI (영국표준협회)	CPA (영국상업용제품인증)
	EPC (에너지효율인증)	FIRA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I-LIDS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LR (영국선급인증)	SCPN (영국화장품등록)	UKCA (영국안전규격인증)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3)	ACCREDI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IMQ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RINA (이탈리아선급협회)
프랑스 (7)	ACS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BV (프랑스선급인증)	CSTB (프랑스건축자재인증)
	DGCCRIF (소비자보호및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선급-GTT)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2)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3)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1)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2)	P mark (스웨덴규격인증)	S mark (스웨덴전기기기안전인증)	
노르웨이 (4)	DNV (노르웨이선급인증)	NEMKO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IPH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NORSOK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2)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Swissmedic (스위스의료기기등록)	
슬로바키아 (1)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벨라루스 (1)	BNOS (벨라루스유기농표준)		
일본 (38)	ASIA GAP (아시아식품관리제도)	BAA (일본자전거승인)	BOKEN (일본방적검사협회)
	CHAdemo (일본전기차급속충전기인증)	CMJ mark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JAS (일본유기제품인증)	JCMVP (암호모듈인증)	JET PVM (일본태양광인증)
	JFSL (일본식품위생법-완구)	JHOSPA (일본위생수지협회의인증)	JIA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국가별	규격인증		
	JIS (일본표준규격)	JISEC (IT시큐리티평가및인증)	JPEX (일본방폭인증)
	JSFL (일본식품위생법)	JWWA (일본상수도협회)	NK (일본선급협회)
	PMDA(JPAL) (일본의약품인증)	Privacy Mark (프라이버시마크제도)	PSC (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SIAA (일본항공제품기술협회)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JAPAN MIC (구. TELEC) (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PSE (일본전기용품안전인증)	ST MARK (일본완구협회안전마크)	JATE (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F-mark (일본 전기용품 및 부품)	MPHPT (일본 우정 통신성)	
러시아 (11)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 관리및위생안전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CU (러시아강제인증)	
말레이시아 (6)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의약품관리청인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4)	COFEPRIS (멕시코연방위생위험관리위원회)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대만 (8)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TFDA (대만의료기기)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ARTC (대만 자동차 및 부품인증)	
태국 (3)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7)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BRAZIL NR (브라질노동복지부규제)	INMETRO (브라질강제인증)	PBE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아라비아 (2)	SASO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터키 (1)	TSE (터키강제인증)		
싱가포르 (11)	BCA Green Mark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BS476-22 (방화도어테스트)	CPS (싱가포르제품안전인증)
	Data Protection Trustmark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HSA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국가별	규격인증		
	SFA (싱가포르식품시설등록)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아르헨티나 (3)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인도 (14)	ARAI (인도자동차협회)	BIS (인도제품인증)	CDSCO (인도화장품등록)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제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체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WPC (인도 통신기기 인증)	
인도네시아 (4)	BKI (인도네시아선급인증)	BPOM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SNI (인도네시아국가규격)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중국 (38)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및사이버보안 전용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품수관련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허가등록제도)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CSQL (중국 안전 품질 승인)	NHFPC (신자원 식품 인증)	NEPSI (중국 방폭 관련 인증)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건설산업과학기술성능평가인증	
카자흐스탄 (1)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1)	GCC (중동적합성마크)		
캐나다 (11)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CRN (캐나다압력제품등록)	CSA (캐나다표준규격)	CSA STAR (클라우드서비스인증)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쿠웨이트 (1)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국가별	규격인증		
(1)			
콜롬비아 (4)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RETIE (변압기강제인증)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폴란드 (3)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 (1)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5)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품청)	
라오스 (1)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9)	CR Mark (베트남안전규격인증)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무선통신인증)
	베트남 비료허가	베트남 식품 인허가	DAV (베트남의료기기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품허가장제품등록	CBMP (베트남 식약처 인증)	VR (베트남선급인증)
호주 (20)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PVMA (호주농약·동물용의약품청)	AS (호주규격협회)	ASI (알루미늄생산공정환경인증)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건축자재인증)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Intereck-SAI-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호주의약품규제기관)
	Water Mark (호주배관제품인증)	WELS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호주농약약품등록
	A-Tick (호주 전자파 적합성 규격-유선)	C-Tick (호주 전자파 적합 규격-무선)	
홍콩 (3)	Green Label (홍콩그린라벨)	HKSM (홍콩제품안전마크)	OFCA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1)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3)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인증)
이란 (3)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1)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리트 (4)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아랍에미리트안전인증)	EQM (아랍에미리트제품적합성마크)
	TRA (아랍에미리트유무선통신인증)		
두바이 (1)	DEWA (두바이 수전력청 인증)		
이스라엘 (2)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 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2)	Ukr SEPRO (우크라이나제품인증)	Uni Cert (우크라이나 적합성인증)	
모로코 (1)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국가별	규격인증		
(1)			
미얀마 (1)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이집트 (2)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 (5)	BIOGRO (뉴질랜드유기농인증)	BRANZ (뉴질랜드건축자재인증)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1)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 효율라벨)		
캄보디아 (1)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코트디부아르 (1)	코트디부아르 수출적합인증서		
국제 (129)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tooth SIG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 확보목적 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포장재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luesign System Partnership (섬유화학유해물질인증)	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Carbon neutral certification (탄소중립인증)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 보안 평가)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위치정보제품인증)
	Cradle to Cradle (제품가치사슬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SCR (EAC State Registry Certificate)
	Ecovadis (지속가능한경영인증)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N 16258 (운송온실가스배출표준)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넷적합성테스트)	E-Stewards (전자제품재활용표준)
	Fair 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FIFA IMS (국제경기규격)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유기농섬유규격)
	Green-e® Energy (청정에너지인증)	GRS (국제재생표준인증)	GRSB (지속가능한소고기인증)
	HDMI (PC·디스플레이·인터페이스표준규격)	Higg Index (의류산업환경부담지수)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인증)	ICAO (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표준)	RDS (Responsible Down Standard)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IEC 61850 (변전자동화인증시험)	IECEX (국제방폭인증)
	IFCC HbA1c (당화혈색소측정검출기기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유기농인증)	ILO-Better work (국제노동인권인증)
	International EPD (국제환경성제품선언)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 (클린룸인증)
	ISCC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ISEGA (유럽식품접촉안전성인증)	ISO 11119-3 (가스실린더설계및시험)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14064 (온실가스의배출, 감축, 검증제도)	ISO 21434 (자동차사이버보안)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3834 (국제용접품질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ISO 7096 (토공기계 인간관련 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EED (녹색건물인증제도)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미사용 인증)	OCPP 1.6 (전기차충전기규약)
	OCS (유기농섬유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duct carbon footprint label (탄소발자국제 품라벨)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Rainforest Alliance (열대우림보호인증)
	RCS (재활용원료포함제품인증)	REPULPABLE AND RECYCLING CERTIFICATION (종이및펄프재활용인증)	RSB (바이오기반원료, 연료인증)
	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	RTRS (지속가능한콩재배인증)	REACH (화학물질등록제도)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OEKO-TEX® Standard 100 (국제친환경섬유인증)	RWS (친환경올생산물복지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META (윤리적인공급망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STANAG (NATO군사장비표준화협정)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 인증)	TISAX (자동차정보보안평가)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인증)
	Visa Pay 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Water Footprint Network (물발자국네트워크)	WHO (세계보건기구살충제인증)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용접절차인증)	WT-Recognition (세계태권도연맹공인인증)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ZDHC MRSL(Lv 1이상) (유해물질배출규제)	IECEE-CB test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
	HALAL (이슬람할랄인증)	IEEE (전기전자기술자협회)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SO 15848 (산업용 밸브- 유해물질 누설에 대한 측정, 시험 및 자격 검증절차)
	PDI (배관, 배수 인증)	SINCERT (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인증)	SUCI (이슬람 생활 용품 인증)
	IHE Connectathon	HACCP International Food safety Program Certification	TAT (Type Acceptance Test/MESC SPE 77-300, 산업용 밸브 형식인증)
	OE (유기농 목화섬유에 대한 인증)	STS (Standard Transfer Specification)	HART Registered (Highway Addressable Remote Transducer)

NO	지원분야	사업명	담당부서
1	기술지원	품목지정형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R&D 지원	전략산업팀
2		용인특례시 반도체기업 기술보호 지원	
3	마케팅·판로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판로지원팀
4		마케팅 지원	
5		해외지사화 지원	
6		해외물류비 지원	
7		수출 대행 서비스 지원	
8		해외플랫폼 입점 지원	
9		소상공인 디자인 지원	
10	사업화 지원	인증·지식재산 지원	사업화지원
11		용인IP지원센터(IP전략)	
12		시제품 제작 지원	
13		디지털 전환 지원	
14		기술가치평가 지원	
15		첨단기술 융복합 실증 지원	전략산업팀
16		소공인스타트업 허브 제품화 지원사업	인프라지원팀
17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 통합 공고(선택형 사업)	
18	창업지원	민관 협력 AC 프로그램 운영	창업지원팀
19		창업 맞춤형 사업화/마케팅 지원	
20		IR경진대회 사업화/마케팅	
21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22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선택형 사업)	

- 위 사업 목록 중 최대 **5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당해년도 기준)
※ 해당 사업목록은 신규사업 신설 및 기존사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천만 원 이상**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천만 원 이상 사업에 추가 지원 불가 (**빨간색 표기**)
ex) A사업 선정(지원금 2천만원) → B사업(지원금 3천만원) 신청 불가, C사업(지원금 5백만원) 신청 가능
- 당해연도 기준 동일 사업에 **1회만** 수혜 가능
ex) 상반기 A사업 선정 → 하반기 A사업 신청 불가 / 미선정 시 신청 가능

□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평가를 통해 기업이 신청한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서류 보완 요청 시, 일정 기한 내 보완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제외될 수 있음
 - ※ 이외 필수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 불가능한 경우, 허위 등 수정 불가능할 경우 평가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서 및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및 참여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됨
 - ※ 상기 외에도 지원금의 부정 청구 또는 부정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당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진흥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취소 및 제재조치됨
ex) □□기관에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고 ▲▲기관에서 동일한 A제품의 목업a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후 실사를 통해 사업장 소재지 및 제출 서류 내용을 대조하여 검증할 예정이며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및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 사업 수행 중 혹은 수행 완료 이후에도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밝혀질 시, 지원 취소 및 지원금 미지급
- 협약기간 동안 사업 공고 내 명시된 지원 자격 조건을 상실할 경우 지원 취소
 - ※ 협약 기간 내 관외 지역 이전 및 (입주 대상 사업의 경우) 입주시설 외로 이전 시 지원 취소
- 이유 불문(사이트 오류 등) 마감 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됨

□ 지원금 집행

- 지원금 및 기업부담금 등 모든 사업비는 부가가치세와 국내외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사업비는 반드시 협약 기간 내 집행해야 하며, 협약 기간 이전 혹은 이후 집행 건은 모두 불인정 ※ 단, 소급지원 가능 사업 제외
- 선지급 사업의 경우 별도 통장을 만들어 사업비를 관리해야 하며, 사업 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진흥원 ‘지원사업 관리 내규’에 의거 제재받을 수 있음

□ 사업수행

- 사업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완료·정산보고서 등 기타 관련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제재 받을 수 있음
- 진흥원 승인(통보)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수행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ex) A제품을 목업 5개 제작하기로 하였으나, 사전승인 없이 3개만 제작한 경우 or PCB를 제작한 경우
- 사업 결과물 및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공고문에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내규 및 안내사항(담당자 이메일, 구두공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